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『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』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18년 7월 18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이자지급 및 우대금리항목 문구정비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제4조 이자지급 ① 생략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 **제5조 우대금리** ① 이 예금에 원가일(또는 해지일)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 2 조 4 항에 해당되는 "장애(아동)수당" 또는 제 2 조 8 항에 해당되는 "아동수당"의 수급실적이 1 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단, 2018 년 9 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.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 5 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, 해당고객이 만 5 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. ③ 우대금리 제공시에는 제4조 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	**제4조 이자지급** ① 좌동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다음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 **제5조 우대금리** ① 이 예금에 원가일(또는 해지일)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 2 조 제 4 항에 해당되는 "장애(아동)수당" 또는 제 2 조 제 8 항에 해당되는 "아동수당"의 수급실적이 1 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단, 2018 년 9 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하며, 우대금리는 제 4 조 제 2 항의 이자계산기간에 셈하여 지급합니다.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 5 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, 해당고객이 만 5 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. ③ 우대금리 제공시에는 제4조 제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	이자지급 및 우대금리 항목 문구정비